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40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권영진·엄태영·김승수

서범수 · 김정재 · 인요한

김도읍 • 신성범 • 윤영석

권영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도시 개발 등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해왔으나, 주민 입주 이후에도 주요 교통시설이 공급되지 않아 입주민 등의 출퇴근 교통 불편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개선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공급을 통해 신도시 입주민 등의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또한, 공공주택사업 대행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 준용 규정에 따라 가능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전부개정('15.8) 시 준용규정 삭제로 현재 대행개발 방식의 민간참여가 불가능해짐.

이에 대행개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민 간이 공공주택사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4항).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분양 등 공 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 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 중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를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 ~ ③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
	분양 등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 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②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	
사의 의견을 들은 후 <u>제17조에</u>	<u>주택지구</u>
따른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	<u>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u>
이를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u> 내에</u>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u>다만, 제2조제3</u>
	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17조에 따른 지
	구계획 승인 이전까지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